

# “전북 현안 해결 새 거버넌스 구축”

### ‘민주 도당위원장 출마’ 이원택 의원, 비전·전략 발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후보 2인인 이원택 의원은 전북 정치는 “새바람, 새인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택 후보는 4일 ‘혁신 전북도당 비전과 전략’을



전북도민과 민주당 전북도당원들에게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그동안 “전북 정치는 인물 중심의 정치, 중앙 정치에 예측된 하향식 정치였다”면서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전북정치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북 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정에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전북 중심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전북 묶음 제대로 찾고 이를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생과 국민, 현장속으로 들어가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비록 갈등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설득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도, 시군 지자체와의 관계도 전북도당이 주체가 되어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택 후보는 끝으로 전북 정치의 혁신과 전북 발전을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따뜻하고 유능한 일하는 전북도당, 경청하고 소통하며, 도민과 당원을 섬기는 도당위원장이 될 것을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 A 정읍시의원, 시와 불법 수의계약 ‘물의를 빚고 있다’

### 본인 소유 건설회사 정읍시와 체결 시 “100% 지분 소유한 사실 몰랐다”

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정읍시의회 A의원이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정읍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원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계약체결의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초선의원인 A의원은 2018년 7월 1일 당선 이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우림건설 대표이사를 2018년 3월 26일 B사로 바꾸고 2020년 2월 28일 상호도 (유)태진산업건설로 교묘히 변경하여 정읍시와 불법으로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유)우림건설에 2019년 4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건에 1억 2589만3260원, (유)태진산업건설에 2020년 3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수의 2인 이상 건적 포함 9건에 1억9708만9000원 등 총 3억 2298만2260원을 정읍시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2018년 11월 17일 1950만원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읍=김태환 기자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초에 의원선서와 더불어 의원윤리강령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를 보면 지위를 남용해 정읍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하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읍시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 시 징계기준은 경고 또는 공개사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정읍시청 계약부서 관계자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백 개가 되는 업체를 일일이 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표자를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며 문제가 된 건설회사를 정읍시의회 A의원이 100%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종부세 최대 6%로 강화...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다주택자 양도세 상향 조정... 법인세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내용에 대한 항의 의미로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 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 /뉴시스

##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도 포함된다

###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 현행법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추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 설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안에는 포함돼 있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야당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 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시스

### 정부·지자체 해상풍력 사업 지원 대상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반영된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등 2가지 사업으로 나눠 진행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기초 설계,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 협의 등 관련 비용 일부를 국비로 최대 75억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중점 평가 항목은 개발 이익 지역 공유,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 등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산업 등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양 공간 조사를 통해 적합 입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권역(기초지자체단위 관할 해역)에 대한 풍황, 환경, 지역 수용성 등을 검토해 어업·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